산업통상자원부	보도참고자료	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8.5.29(화)	담당부서	전력진흥과
담당과장	남경모 전력진흥과장(044-203-5260)	담 당 자	김양지 서기관(044-203-5262)

4차 산업혁명 이끌 전기 신사업 키운다

- 소규모 전력중개사업, 전기차 충전사업 등 전기신사업 도입 -

- 분산자원 확대에 대응해, 20년만에 전기사업법 체계 손질 -

- 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('18.5.28일) **-**

□ '18. 5. 28.(월), 소규모 전력중개사업,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등 **전기신사업을 도입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**이 **국회 본회의를 통과**했다.

○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신산업 제도개선의 일환으로, **'16. 6월,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후 약 2년 만에 본회의에서 통과했다.**

< 개정 배경 >

□ 최근 전력시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, 전기차, 에너지저장장치(ESS)와 같은 **소규모 전력자원이 빠르게 확산**되어 왔다.

○ 그러나, 전기사업법은 '00년 발전사업, 송전사업, 배전사업, 판매사업 등 **대규모 전기사업을 중심**으로 **수직적 전기공급 체계가 정립**한 이후 약 20년간 그 틀이 유지되면서,

○ 소규모 자원 확산에 따라 등장한 **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데에 한계**가 있었다.

< 개정안 주요내용 >

□ 개정된 전기사업법은 **전기신사업**으로 **소규모 전력중개사업과 전기차 충전사업**을 각각 **신설**했다.

① 1MW이하 신재생에너지, 에너지저장장치, 전기차에서 **생산 또는 저장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전력중개사업을 신설**

○ 현재는 **태양광 발전소**에서 생산된 전기는 **사업자가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**하여 **거래**해야 하지만,

○ 개정안은 **발전사업자**나 전기차를 보유한 **소비자를 대신하여, 중개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**하여, 소규모 사업자가 보다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림

○ 또한, 전력거래소는 **중개사업자를 통해 소규모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**할 수 있게 돼 전력시장의 안정성이 향상

② **현재 지능형전력망법에 근거**하여 사업중인 **전기자동차 충전사업***은 전기차에 유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·신설하여, **전기사업법상으로도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료화**

* '18.4월 현재 82개 사업자 등록 중

○ 주유소와 마찬가지로, **충전소도 충전요금을 표시**하고, 이를 **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**

③ 2개 전기신사업은 **허가가 아닌 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**하고, **약관도 인가 없이 신고**하도록 하여 기존의 전기사업과 비교하여 **사업요건을 대폭 완화**

< 기대효과 >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**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**고,

○ **제품 중심의 에너지신산업이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**되어 **가상발전소**(VPP), **차량전력망(V2G:** Vehicle to Grid)와 같은 **다양한 서비스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.**

* VPP(Virtual Power Plant) : 다수의 분산자원을 집합적으로 관리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사업모델

* V2G(Vehicle to Grid) : 전기차 배터리의 충전전력을 전력망에 공급하는 등 전기차를 활용한 전기서비스 모델

□ **업계**도 **본격적으로 에너지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**이 갖추어진 데에 **기대감을 나타냈다.**

○ 특히, **전력중개 시범사업을 준비해 왔던 기업**들은 법률 통과를 반기고 있다.

○ **한 중소업체**는 유럽에서 전력중개 사업모델로 창업하여 성공한 사례가 많다면서, **우리나라 에너지신산업의 성공사례가 되고 싶다는 희망**을 표현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**올해 12월전까지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**하고, 전기신사업자 관리 위탁, 전력중개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.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김양지 서기관(☎044-203-5262)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